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4.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18호로 2024년 4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자치구별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상이하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용어 정의 신설(안 제1조의2)
- 나. 조문문구 수정(안 제2조의제1항, 제17조)
- 다. 안전 심의 금액 기준 통일(안 제5조제3호가목)
- 라. 고충민원 대상 정의, 신청대상 정비(안 제6조, 제7조제2항)
- 마.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횟수 정비(안 제11조제1항~제2항)
- 바. 세무조사기간 연장, 연기신청 처리기한 정비(안 제15조~제16조)
- 사. 세무업무 민원접수 이원화로 납세자 혼란·불편해소 조문 삭제

(현행 제24조~제30조) 및 정비(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3)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4. 3. 7. ~ 3. 27./20일간)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구(區)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일화하여 구민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의2(정의)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고충민원”(처분이 완료된 사항)과 “권리보호요청”(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을 따로 구분하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안 제4조(납세보호관의 업무)에서 납세보호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區)의 현실적인 실정에 맞게 표준안을 참고하여

정비함.

- **안 제7조제2항(고충민원의 신청기간)**에서 고충민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성격일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함. 다만,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의 고충민원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아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방세 고충민원의 신청 기간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일부개정조례(안)
<p>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다.</p> <p>②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제7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p> <p>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p>

그러나, 본 조례의 제7조항은 자치구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기간을 일원화하여 자치구 간 형평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기에 추후 자치구 담당자 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임.

- **안 제11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1)를 반영하고, 자치구별로 민원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고자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함.

- 안 제15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제16조(세무조사 연기신청)에서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기간과 조사 연기신청 기간의 규정을 “7일 이내”로 통일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구간 제도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함.
- 현행 조례 제24조(기한의 연장신청)~제30조(시행규칙)를 삭제함.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가 아닌 구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인 감사담당관²⁾에 배치되어 있고 해당 조항의 사항³⁾에 관한 처리는 본질적으로 징수과에 있어 업무처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실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납세자보호관의 판단이 가이드라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있기에 납세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짐.

○ 검토 결과

- 「지방세기본법」 제77조⁴⁾를 근거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구(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 2018.10.4.)를 제정하여 납세자를 보

1)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2)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의 신청

4)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호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⁵⁾”를 ’19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조례 제정 당시 상위법령에서 시·군·구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로 정할 것을 위임한바, 서울시 자치구별로 세부 사항의 통일성이 다소 떨어진 측면이 있었음.

- 서울시는 지난 ’23년 2월 「자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제 정비 추진 통보」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자치구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조문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배포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 구(區)에서는 표준안을 참고하여 납세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서울시 자치구 간 통일성 있는 사업 시행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5)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업무추진 실적

연도	건수	고충민원	세무상담	비고
2019	30	-	30	-
2020	32	-	32	-
2021	54	13	41	-
2022	63	12	51	-
2023	101	10	91	-

참 고 자 료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